

2022년 제6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2022년 제6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2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안내(10월26일)하며 불합격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수험번호 순)

구분	지원 분야	응시번호
정규직	일반직 6급 (정보화)	0226-000003 0226-000004 0226-000015 0226-000018 0226-000030
	일반직 6급 (경영지원)	0227-000019 0227-000030 0227-000055 0227-000130 0227-000245
무기계약직	일반업무직 라급 (정보화)	0228-000002 0228-000009 0228-000011 0228-000012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전문업무직 다급 (심사직)	0229-000003 0229-000004
	일반업무직 라급 (피해구제)	합격자 없음
	일반업무직 라급 (예방교육)	0231-000002 0231-000005 0231-000006
	지원업무직 라급 (수탁감정)	0232-000002 0232-000005 0232-000010

2. 면접심사 계획

다음의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면접일정

※ “지원분야별 소집일시·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일정을 확인하여 참석 바랍니다. (가급적 정시도착 요망, 소집시간 10분전 시험장 개방)

* 지정된 일정 외 별도 또는 추가면접 없음

○ (일시 및 장소) '22. 11. 10.(목)~11. 11.(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본원*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 20층(지하 서울역 10번 출구 연결)

지원 분야		소집일시		장소
정규직	일반직 6급(정보화)	11.10.(목)	14:00	본원 18층
	일반직 6급(경영지원)		15:10	
무기계약직	일반업무직 라급(정보화)	11.10.(목)	14:00	본원 20층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대체)	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	11.11.(금)	14:00	
	일반업무직 라급(예방교육)		14:30	
	지원업무직 라급(수탁감정)		15:20	

* 상기일정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② 면접 진행방식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하여 전문성 및 원활한 조직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규직 지원자의 경우 면접 전(당일) 개별과제 수행 후 면접 실시

- 면접대상자는 온라인 인적성(역량)검사 실시, 검사 미응시 또는 기간 내 미완료의 경우 면접심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인적성(역량)검사 응시기간 : '22. 10. 26.(수)~11. 3.(목) 11:00 까지

※ 인적성검사 사이트: <https://k-medi.acca.ai> (인증코드 개별발송)

(다음장 계속)

【 온라인 인적성(역량)검사 사전 필수 확인사항 】

1. 필수 사양: 유선인터넷, 키보드, 마우스, 웹캠, 마이크, 크롬 브라우저
2. 웹캠, 마이크 체크
3. 검사 시 웹캠을 응시하고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 또한 응시 중 카메라 각도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
4. 응시 중 새로고침이나 뒤로가기 불가(접속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 발생 시 유선 문의 바람)

※ 응시 전 유의사항 확인 및 응시환경 체크(필요 시 문의바람)

③ 증명서류 제출

- 면접시험 대상자는 다음의 증명서류를 '22. 10. 26.(수)~11. 3.(목) 11:00 까지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엄수, 지정된 시간까지 미제출 시 면접심사 진행 불가

《공통서류》

- 증명사진(JPG파일,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
- 경력증명서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가급적 관련 수행업무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이력 확인용)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 1) 법학, 보건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심사직 지원자에 한정),
 -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대상자 필수* 분교의 경우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제출
 -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확인서 (※모든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 제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최종 임용 시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필요)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④ 유의사항

- 증명서류는 응시지원서에 작성한 경력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요청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까지 보관 후 파기되며, 지원자는 증명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된 경우 예외)
- 면접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으므로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고용형태, 경력·자격 요건 미달, 가점여부 착오기입 등)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상기 면접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면접일시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최종합격자 발표

① 발표예정일 : '22. 11. 18.(금)

- 우리 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상기일정은 예정일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② 임용예정일 : '22. 12. 1.(목)

채용 관련 문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담당자 : 02-6210-0134
- 응대가능시간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정부 방역지침 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2022년 제6차 면접심사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면접심사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사항

- 모든 응시자는 면접심사 계획 발표일부터 면접일까지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3밀(밀접, 밀폐, 밀집)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가정 내 방역 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 환자,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면접장 및 개별과제 시험장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잠시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면접시험 종료 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유증상 시 보건당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대상자 또는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응시자는 즉시 채용 담당자(02-6210-0134)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3.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면접응시

- 면접심사 대상자* 중 보건 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보 또는 격리통보를 받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면접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 중 인적성(역량)검사 응시를 완료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완료한자

- ◇ 대상자 : 전형기간 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통보자
- ◇ 신청기한 : 해당 지원분야의 면접심사 전일 18시까지
- ◇ 신청방법 :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이메일로 격리통보서 등 증명서 제출
 - 유선 : 02-6210-0134 / 이메일 : pmj01@k-medi.or.kr
- ◇ 면접방법 : 기간 및 응시방법 별도 안내
 - *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코로나 19 확진자(또는 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사전 신청자 중 완치된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응시하여야 함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일반수칙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꼭 필요한 경우(병원 방문 등)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가정 내 주의사항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기
* 특히 고위험군(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과 접촉 피하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
-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
-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 등교, 출근하기
-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13판 기준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①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 주의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에 신고

2. 감염병의심자 정의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붙임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0판 기준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참고.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입원 시 주요증상]

* (출처)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기침	41.8%	근육통	16.5%	설사	9.2%
객담	28.9%	인후염	15.7%	구토/오심	4.3%
발열 (≥37.5°C)	21.1%	호흡곤란	11.9%	피로/권태	4.2%
두통	17.2%	콧물	11%	증상없음	26.7%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기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수 상황에서 보통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2미터) 이상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Q5.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 대증 치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입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 시 내용 변경 가능

■ 시험에 참여하는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 담당자(전담공무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모니터링 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 모니터링 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총 4회*)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 * 모니터링 담당자와 상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 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